

의안번호	제76호
의결연월일	2018. 9. 10.

**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8월 28일 논산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2018년 9월 10일,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환경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상의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수립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고,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 주기(5년)를 규정하여 변동사항 반영 및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가.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세부적인 정의 정립(제2조제8호)
- 나.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 주기(5년) 추가(제6조제2항)
- 다.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 보완(제8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